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분묘 개장공고(2차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995호(2016.12.30.)로 지구지정되고 제2024-279호(2024.05.28.)로 지정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승인된「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」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,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(이장)하게 됨을 공고합니다.

1. 분묘 소재지

분묘 소재지	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	33-1, 44, 44-2, 45-1, 45-2, 46, 46-1, 46-2, 48-1, 48-3, 49-1 49-2, 50, 50-1, 50-2, 51, 52-1, 52-2, 54, 55, 56, 57-1, 57-2 58, 58-2, 58-3, 58-4, 58-5, 58-6, 58-7, 59, 59-1, 59-2, 60-1 60-2, 61-2, 64-2, 64-4, 64-5, 66-1, 69-1, 73-1, 75-1, 81 81-1, 81-2, 82-2, 82-3, 82-4, 83, 83-1, 83-3, 83-7, 83-8 83-9 83-10, 83-11, 83-13, 83-14, 83-22, 83-23, 88-1, 89-1 124-1, 124-2, 124-3, 137, 140-6, 142, 142-1, 142-2, 142-3 143-1 144, 144-2, 145, 145-1, 149, 149-2, 445, 446, 448, 산20-2 산21, 산30, 산32-5, 산43-2, 산44-1, 산44-2, 산44-5, 산45-1 산46-1, 산47-1, 산47-2, 산48-1, 산49, 산50, 산51, 산52, 산53 산54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	349-1, 350, 351, 352, 353, 354, 355, 356, 357-1, 357-2, 358 359, 360-1, 360-2, 361-1, 361-2, 362, 363-1, 363-2, 364-1 364-2, 364-3, 364-4, 365-1, 365-2, 366, 367, 368, 370-1, 373 374, 375-1, 375-2, 375-3, 375-4, 375-5, 376, 377, 380, 381-1 381-6, 397, 464-1, 464-2, 471, 472, 473, 474, 475, 산31-8 산31-9, 산31-10, 산31-11, 산31-12, 산31-13, 산32, 산33 산39-1, 산40-1, 산40-2, 산40-3, 산40-4, 산40-5, 산40-6, 산40-7 산40-8, 산40-9, 산40-10, 산41, 산42-1, 산43-3, 산43-4, 산43-5

※ 상기 지번 및 그 외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 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.

2. **개 장 사 유** :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
 - 지구위치 :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, 청덕동 일원
 - 지구면적 : 904,921㎡
 - 사업기간 : 2016. 12. 30. ~ 2028. 12. 31.

3. **공 고 기 간** : 2026. 02. 05. ~ 2026. 03. 31.

4. **개장방법**
 · **유연분묘** : 분묘연고자(관계인)가 개장신고 후 이장(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)
 · **무연분묘** :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(화장 후 납골안치)

5. **무연분묘 이장(안치)장소 및 기간**
 - **안치 장소** : 추후 결정(화장 후 납골안치)
 - **안치 기간** : 봉안 후 5년

6. **신 고 요 령** : 연고(관리)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족보, 제적등본 등)를 구비하여 하단 신고처에 신고

7. **신고처**
 -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팀
 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☎ 031-250-6180)

8. **기타사항**

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개장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. 또한,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02월 05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